

예비심사 안건

의안번호	제2013 - 호
의결 연월일	2013. 10 . (제 회)

의 결
사 항

「중소기업사업조정시행세칙」 제정(안)
신설·강화규제 심사안

제안자	중소기업청장 한정화
제출년월일	2013. 10. .

목 차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	1
□ 요 약	1
□ 제도(개정안) 개요	2
II. 규제심사안	3
◦ 일시정지 권고 이행명령(시행세칙)	9

I. 규제심사안 개요

□ 요 약

규제 사무명	현행 규제내용	변경(또는 신설) 규제내용
○ 일시정지 권고이행 명령	○ <신설>	<p>○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·개시·확장을 일시정지 권고, 공표후에도 불이행시 조정심의회 의결을 거쳐 일시정지 권고 이행을 명할 수 있음</p> <p>⇒(사유)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·개시·확장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, 공표에 그치고 있으나,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일시정지 이행 명령제 도입</p> <p>* (상생법 개정 내용) 중기청장은 대기업등에 일시정지 권고 불이행에 대한 공표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불이행시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음</p>

□ 제도(개정안) 개요

(도입배경)

-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·개시·확장에 대해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때 까지일시정지 권고, 공표할 수 있으나, 불이행시 이에 대한 이행력 확보방안이 없음

(추진방안)

- 중소기업청장은 일시정지 불이행 사실을 공표한 후 심의회을 신속하게 개최하여 일시정지 이행명령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하며, 이행명령을 심의의결한 경우 신속하게 일시정지 명령을 하도록 함
 - * 삼생법 제34조제3항('13.8.6 공포) 인용

(주요내용)

- (시행세칙) 일시정지 이행명령
 - 중기청장은 불이행 사실 공표후 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
 - 일시정지 이행명령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
 -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심의 · 의결한 경우 신속하게 일시정지 명령
 - 일시정지 이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

II. 규제심사안

①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중소기업청장은 일시정지 불이행 사실을 공표한 후 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여 일시정지 이행명령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하며, 이행명령을 심의의결한 경우 신속하게 일시정지 명령을 하도록 함

⇒ (사유)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·개시·확장에 대해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때까지 일시정지 권고, 공표를 할 수 있으나, 불이행시 이에 대한 이행력 확보방안이 없음

<조문 대비표>

개정전	개정후
<신설>	<p>제21조(일시정지 이행명령) ① 중소기업청장(또는 시·도지사)은 제20조에 따라 일시정지 불이행 사실을 공표한 후 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여 일시정지 이행명령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중소기업청장(또는 시·도지사)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에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심의의결한 경우 해당 대기업 등에 신속하게 사업의</p>

개정전	개정후
	<p>일시정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대기업 등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</p>

② 규제영향분석서

【분석대상 규제의 개요】

1. 규제사무명령	등록번호 등록단위	미등록		구분							
		주규제	부수규제	신설	○	강화		내용심사		존속기한연장	
		○									
	일시정지 권고 이행명령	경제적 규제	○	사회적 규제				행정적 규제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국장 김형영,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인섭(042-481-4408) 										
3. 근거법령명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						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	의견수렴 방식				의견내용			
	피규제자	대기업 등		입법예고 (10.17~11.6)				없음			
	이해관계자	중소기업단체(중소기업)		입법예고 (10.17~11.6)				없음			
	관련 부처	해당없음		해당없음				없음			
5. 규제존속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『대·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』에 일시정지 이행명령의 구체적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, 또한 관련 법률이 										

	한시법이 아니므로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						
6. 종전규제 및 신설(강화) 규제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강화 규제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청장은 일시정지 불이행 사실을 공표한 후 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여 일시정지 이행명령 여부에 대해 심의·의결하며, 이행명령을 심의·의결한 경우 신속하게 일시정지 명령을 하도록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시정지 이행명령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징수 * 상생법 개정 일시정지 이행명령 근거조항 신설('13.8.6 공포) 						
7. 규제체계도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일시정지 권고, 공표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→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일시정지 이행명령 (심의회 의결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중소기업청장 → 대기업 등</td> <td>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중소기업청장 → 대기업 등</td> </tr> </table>	일시정지 권고, 공표	→	일시정지 이행명령 (심의회 의결)	중소기업청장 → 대기업 등		중소기업청장 → 대기업 등
일시정지 권고, 공표	→	일시정지 이행명령 (심의회 의결)					
중소기업청장 → 대기업 등		중소기업청장 → 대기업 등					

【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】

(1) 규제의 필요성

(1-1) 문제 정의

-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·개시·확장에 대해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시정지 권고, 공표를 할 수 있으나, 불이행시 이에 대한 이행력 확보방안이 없어 이행력 제고를 위한 상생법 개정 완료

※ 상생법 제34조제3항 신설('13.8.6 공포)

(1-2) 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성

(정부 개입의 필요성)

-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·개시·확장에 따른 일시정지 권고(공표)를 할 수 있으나,
 - 불이행시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가 부재하여 일시정지 이

행명령제를 도입하고 이행명령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

(해외 사례) 없음

(2)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(2-1) 규제 대안 검토

- 대기업등이 일시정지 권고에 따르지 따르지 않는 경우 공표 할 수 있으나, 공표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
- 일시정지 이행명령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적정한 행정 지도에 해당(규제 대안 없음)

(2-2) 비용·편익 분석

- (비용) 대기업이 사업 인수·개시·확장에 대한 일시정지 이행명령으로 추가비용이 수반되지 않음.
- (편익)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에 대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영역 보호의 행정조치 효과 등의 편익 발생

(2-3)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

- (과도한 규제비용 유발 여부) 대기업에 대한 행정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부담 발생요인이 없음
- (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가능 또는 필요한 규제방식 여부) 일시정지 이행명령은 대기업의 일시정지 권고 불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 수단으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

(3) 규제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

(3-1) 규제의 적정성

-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적정한 수준에 해당

(3-2) 이해관계자 협의

-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('13.10.17~11.6) 결과 중견기업연합회는 일시정지 권고·공표·이행명령 등 일시정지 제도 불필요 의견 제출(대기업의 사업활동을 전면 중지하는 지나친 규제)

(3-3) 규제집행의 실효성

- 동 시행세칙에서 일시정지 권고요건, 적용범위, 위반시 공표, 이행명령, 이행명령 철회 등 진행 단계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 확보 가능